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되어 있음
- 내부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구 성
 - 위 원 장 : 부지사
 - 부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 위 원 : 관현실·국장,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촉한 자
- 기 능 :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함.
 -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 기타 참고자료 : 근거법령 (별첨)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관련 실·국장,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계장이 된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 리 송부하여 사건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 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 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根據法令

地方財政法

第16條(中·長期地方財政計劃의 수립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財政을 計劃性있게 運用하기 위하여 中·長期地方財政計劃(이하 “地方財政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地方議會에 報告하고, 이를 內務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財政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內務部長官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地方財政計劃이 關係法속에 의한 國家計劃 및 地域計劃과 連繫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內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財政計劃을 기초로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綜合的인 地方財政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國務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地方財政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91. 12. 31]

第16條의2(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 ①地方財政計劃의 樹立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각 地方自治團體에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91. 12. 3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결산검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재관적으로 확보하고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의 구성

의회의원 1인과 재무관리 전문인 4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것을 의회의원 또는 재무관리 전문인으로 구성토록 함.

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의회의원 1인 외는 자치단체의장이 2배수로 추천한자 중에서 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되 2인을 자치단체의장이 추천 하는자로 할 수 있도록 함.

다. 검사위원에게 지급하게 되어있는 일비의 현실화

일비 "20,000원"을 "50,000원"으로 상향조정(제13조 별표제2호)

3.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 46조 제1항

첨 부 : 1.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근거법령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제2호중 일비난의 액수 “2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외 정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2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